

2007. 6. 22(금)

136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자치행정위원회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6. 11.  
나. 회부일자 : 2007. 6. 11.  
다. 상정일자 : 2007. 6. 19.(제136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난관리팀장 박가훈)

#### 가. 제안사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법률 제8283호 2007. 1. 26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코자함

#### 나. 주요내용

- 지역자율방재단 목적 및 조직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 제4조)
-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규정(제7조, 제8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규정(제9조, 제10조)
-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사항규정(제13조,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법률 제8283호 2007. 1. 26) 및 동법 시행령 제 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로부터 2007. 2. 23일 지역자율방재단 표준 조례안에 대한 보완 시달 공문이 접수되어, 표준조례를 기초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작성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7. 4. 4일부터 5. 10일 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 하게 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겠습니다.

○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8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로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사전예방과 관련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물자의 조달 및 전달, 응급복구 등 방재단의 임무를 명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조직된 방재단의 할일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토록 명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방재단이 원활한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제 10조(운영 등)의 9항과 같이 방재단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용 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등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방재단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인 바, 행정적·법규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됨.

○ 다만, 안 9조3항의 내용 중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단서 생략).”라고 한 바,

안 제9조(소집)에 의한 소집권한이 있는 단장 또는 시장(단장과 협의 시)이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응소하지 않음으로 인한 형식적인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지 않도록 교육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예산만 낭비 한다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전개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시장이 소집 할 수 있는 경우는 단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하였으므로 시장과 단장 사이의 상호의견에 충돌이 발생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조례가 입법목적을 다하거나 사정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폐지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조례가 가결되어 시행 될 경우 기존의 「제천시수방단 운영조례, 1996. 11. 22 조례 제212호」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 자율방재단에 가입하면 여비, 식대, 피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악의적인 소재로 발전하여 예산신청을 각 단체에서 요구할 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박성하 의원)

○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행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율적인 참여하에 긴급재난시에는 불참하고 체육행사에는 참석율이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박성하의원)

○ 제4조에 보면 단장을 단원들이 선출한다고 했는데 단장을 선출 하려면 각 읍·면·동의 대원이 직접선출을 해야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한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강현삼의원)

#### 나. 담변요지(재난관리팀장 박가훈)

○ 자율방재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나 우리시 재정을 생각할 때 제한된 조건하에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타시군 조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방재청 표준안에 근거하였습니다.

○ 많은 인원이 자율방재단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여야 하고 불편 등을 감안하여 읍·면·동 대표가 선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5. 소수의견

“없음”

### 6. 토론요지

“제4조 2항 단장 선출방법 변경, 제7항 방재단 참가자격을 개인과 단체로 제한, 제10조 9항 2호에서 보험가입조건을 자연재난복구 임무 수행으로 제한, 4호(체육행사) 삭제, 제천시 수방단운영조례 폐기” 함이 타당함.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수정조례안. 1부. 끝.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7. 6. 19.

제 안 자 : 강현삼 의원

## 1. 수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장의 효율적인 선출방법, 방재단의 참가자격의 제한, 보험가입비 지원조건 제한, 체육행사 지원 삭제를 통하여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금번 조례안에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는 조례의 사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2. 수정 주요골자

- 제4조 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에서 단원을 읍·면·동 방재단 대표로
- 제4조 7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한다를 제4조 7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로
- 제10조 9항 2호에서 단원의 임무수행률 단원의 자연재난복구 임무수행중으로

- 제4호 삭제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제천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로 하여 1항을 추가함.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한다.

- 제4조 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에서 단원을 읍·면·동 방재단 대표로
- 제4조 7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에서 제4조 7항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로
- 제10조 9항 2호에서 단원의 임무수행률 단원의 자연재난복구 임무수행중으로
- 제4호 삭제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제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한다로 추가

#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조직)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한다. ....</p> <p>제10조 ⑨</p> <p>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p> <p>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p> <p>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p> <p>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p> <p>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4조(조직) ② 단장은 읍·면·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p> <p>제10조 ⑨</p> <p>2. 단원의 자연재난복구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보험가입비, 단 ....</p> <p>4. 삭제</p> <p>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p> <p>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p> <p>6.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p> <p>부칙</p> <p>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제천시 수방단운영조례를 폐지한다.</p>